

[일련번호 : 103]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따르면 롤러 및 그레이더, 굴착기 및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안양천 녹지대 정비 관련 장비 임차비’ 지출 시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